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

2026. 1.

보건복지부

본 안내서는 ’26. 1. 19.부터 적용함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 ····· 1
2. 관련 법령 ····· 1
3. 주요 내용 ····· 1
4. 업무 처리절차 개요 ····· 4

Ⅱ. 생산시설 지정 ····· 6
1. 지정계획 공고 ····· 6
2. 사전교육 ····· 6
3. 신청접수 ····· 7
4. 서류심사 ····· 12
5. 현장심사 ····· 13
6. 결과통보 ····· 15
7. 이의신청 ····· 15
8. 지정공고 및 지정서 교부 ····· 16
9. 생산시설 재지정 ····· 17
10. 지정서 재발급 ····· 21
11. 세부품목 추가신청 ····· 25
12. 찾아가는 심사상담 ····· 27

Ⅲ. 생산시설 사후관리 ····· 29
1. 사후점검 통합관리계획 수립·운영 ····· 29
2. 정기 사후점검 ····· 30
3. 민원점검 ····· 34
4. 현황점검 ····· 38
5. 종사자의무교육 ····· 41

Ⅳ. 생산시설 행정처분 등 ····· 43
1. 행정처분 요건 ····· 44
2. 행정처분 적용기준 등 ····· 47
3. 행정처분 절차 ····· 51
4. 벌칙 등 ····· 54
5. 고발 ····· 57

붙임 목차

<붙임1 :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세부품목 추가 신청 매뉴얼> ····· 59
<붙임2 : 꿈드래 쇼핑몰 찾아가는 심사상담 신청 매뉴얼> ····· 66
<붙임3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의무교육 신청방법> ····· 70
<붙임4 : 각종 서식> ····· 75

서식 목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대장 ····· 76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관리대장(서류.현장) ····· 76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리대장 ····· 77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교부대장 ····· 77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관리대장 ····· 78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리대장 ····· 78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서 ····· 79
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 80
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결과통보서(서류.현장) ····· 81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 82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83
12. 현장조사서 ····· 84
13. 사실확인서 ····· 85
14. 생산설비 보유 확인서 ····· 86
15. 추가자료 제출 요구서 ····· 87
16.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88
17. 의견제출서 ····· 90
18.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91
19. 청문출석 포기 확인서 ····· 92
20. 청문조서 ····· 93
21. 청문주재자 의견서 ····· 94
22.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전출금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 ····· 95
2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이의신청서 ····· 96

Ⅰ. 개요

1 목 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지정심사, 사후점검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지정취소 등) 등 업무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업무 처리하고자 함

*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비율, 직접생산 등 일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

2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3 주요 내용

1 생산시설 지정 (특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6조·제17조 등)

○ 생산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3~5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지정심사를 거쳐 다시 지정받을 수 있음

2 생산시설 행정처분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단,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가.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라.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마.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바.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됨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3 지도·감독 (특별법 제18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생산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현장조사서 등)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4 청문 (특별법 제2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지정 취소(처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취소(처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5 벌칙 (특별법 제22조)

○ 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특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과태료 (특별법 제23조)

○ 특별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함

4 업무 처리절차 개요

○ 생산시설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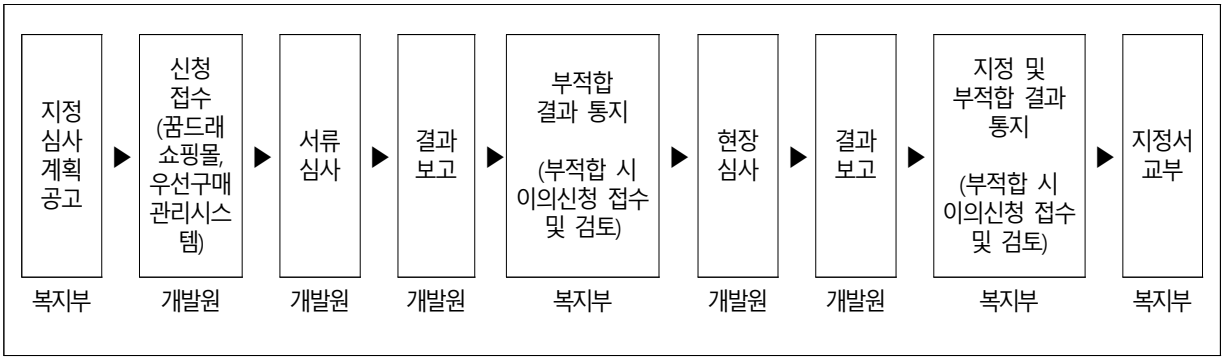

※ 현장심사 결과 적합 확정 시 지정서 우편 수령 및 생산품 등록(우선구매관리시스템) 가능

○ 생산시설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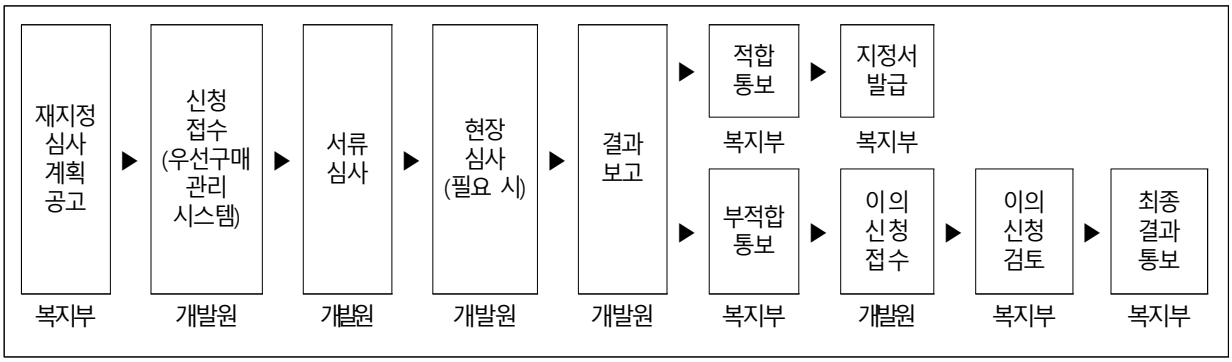

※ (유효기간 만료) 최종 부적합 통보의 경우, 기존 지정서 만료일까지 한함

※ 최종 부적합 통보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시설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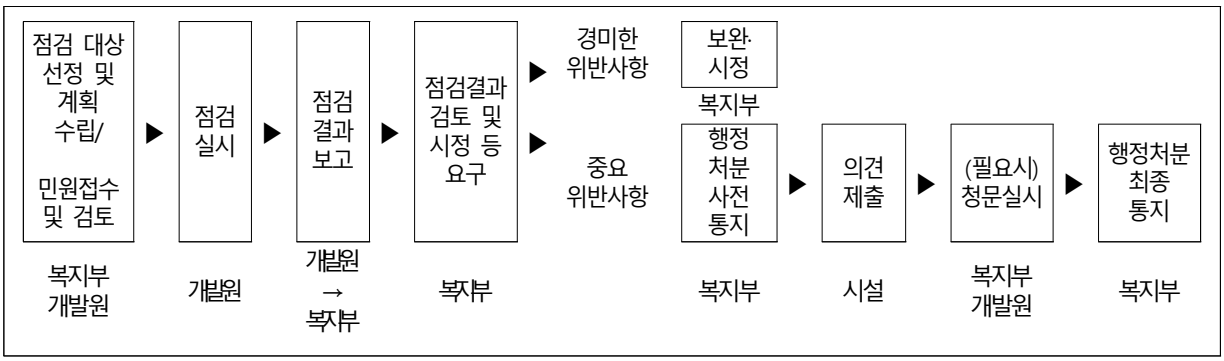

※ 민원점검의 세부 절차의 경우 「III. 생산시설 사후관리 - 3. 민원점검」 참고

※ 행정처분(개선명령)은 청문 생략 가능

<참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업무>

□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특별법 제12조)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3.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1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 업무수행기관별 업무

한국장애인개발원 ('09.6. 지정)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2.9. 지정)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 구매실적·계획의 취합, 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4.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지정 사후관리 관련 사무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지원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8.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13.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14.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15.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실시에 대한 지원 16.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에 대한 지원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6.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8.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9.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Ⅱ. 생산시설 지정

1 지정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방법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및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에 게재

2 공고내용

○ 사전교육 관련 :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 지정심사 관련 : 심사기관, 심사기준 및 방법, 지정신청서류 등

○ 기타 : 지정 시 유효기간, 문의처 등

3 신청방법 및 기간 등 : 공고문에 게재

2 사전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1 교육대상 :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제한 없음(누구나 참석 가능)

2 교육방법 : 오프라인 집합교육

3 교육운영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4 교육 횟수 및 일자 등 :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게재

* 연초 보건복지부 공고계획에 따르며, 교육 횟수 및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교육내용 :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절차, 지정 신청방법, 지정 심사기준 등

6 신청방법 :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을 통한 신청서 접수

3 신청접수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1 **신청대상** :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둘 이상의 품목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각 품목별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품목별로 적합 여부 판단)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공고절차에 따름)

○ 신규 신청시설의 경우

-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제출

○ 기지정 시설*의 「품목 추가」의 경우

-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 '품목추가신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제출

* 기지정 시설이란, 이미 생산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함

☞ 추가서류 제출 시 서류누락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3 신청접수

○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은 꿈드래 쇼핑몰(신규 신청시설) 또는 우선구매관리시스템(기지정 시설)을 통해 접수

- 시스템(꿈드래 쇼핑몰·우선구매관리시스템)상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 고용 및 비율 미충족 시 신청 불가

- 서류 제출 시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불가하며, 신청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류임에도 제출 누락 또는 부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 반려할 수 있음

* 시스템 신청 중 오류 발생 시,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즉시 유선 문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4 제출기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기간

5 제출서류 : 법정서류, 신청 시설 근로자 및 직접생산 관련 근거 서류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제출서류	비고
법정 서류	◦ 지정신청서 ※ 꿈드래 쇼핑몰(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www.goods.go.kr)	☞ **[서식 7]** 지정신청서
	◦ (온라인 작성) 근로자 명부	
	◦ 근로자 임금대장	
	◦ 정관 또는 규약	
적격성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 (온라인 작성) 생산공정도, 직접생산 장비 및 원부자재 목록, 생산공정별 직무배치도, 지정심사 기준 자가 체크리스트	
근로자 관련	◦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 전체근로자 근로계약서	
	◦ 장애인증명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포함 비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각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신청 공문 및 첨부문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 지방자치단체 임면보고 승인 공문 (지자체→생산시설)	
	◦ (해당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서	
	◦ 최근1개월 급여 지급내역(급여대장,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현금 지급 시 증빙서류 (현금수령증, 임금명세서 등)
	◦ 직무기술서	
	◦ (해당시) 일용근로자 관련 서류	
	◦ 출·퇴근 기록부(최근 1개월)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접생산 관련	◦ 법인등기부등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하단의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고유 목적사업 사용 계획 작성	☞ **[서식 8]**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	
	◦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해당시) 생산시설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 (해당시) 생산시설 임대인 국세청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각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 (해당시) 위.수탁협약서	◦ 직업재활시설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또는 고정자산관리대장 또는 생산설비 구입 증빙 서류	
	◦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임대차계약서	
	◦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해당시) 기증 및 공증서	
	◦ 전기요금 고지서,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최근 1개월)	
	◦ 세부품목 신청 서류	
	◦ 품목별 전문기술인력 이력서(필수), 자격증(해당시)	
	◦ 신청품목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허가 서류 예시) 조명기구: KC인증서류, 검교정성적서 등 제과제빵, 김치: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청소: 위생용역업신고증 CCTV: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 등 인쇄물: 인쇄사신고필증 등	

6 현황보고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신청 시설 현황을 접수완료 후 보건복지부로 공문 보고

☞ **[서식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대장**

7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신청 기간 내에 지정신청 불가 시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지정신청 접수시스템 오류**, 공사에 의한 전기사용 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접수시스템 오류의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12시(정오) 이전에 최초 로그인 기록이 확인되어야 함(지정신청 최소 소요시간 4시간 소요)

○ 신청기간: 지정심사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공문, 이의신청 양식 및 증빙서류

☞ **[서식 2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이의신청서**

○ 제 출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 검토절차: 이의신청 → 검토 → (수용 시) 추가 접수 안내

4 서류심사 (한국장애인개발원)

1 서류심사 기관 : 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2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신청시설

○ 심사내용 :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등 충족 여부 서류심사

3 보완 요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신청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필요시 유선 또는 공문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4 서류심사 결과통보(보건복지부→신청시설)

○ 서류심사 결과 '적합' 시설은 현장심사 실시 통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신청시설)

○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부적합 통보(복지부→신청시설)

5 현장심사 (한국장애인개발원)

1 사전공지

○ 공지방법 : 공문발송 (심사일정, 현장심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 안내)

< 현장심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구 분	준비서류	비고
근로자 관련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나다순 출력) - 현장심사 당일 출력	-
	2) 근무상황부(현장심사 당일 미출근 시) - 휴가/출장/병가 등 미출근 확인 서류	사본제출
	3) 전체 근로자 출퇴근기록부(현장심사일 기준 최근 1개월) - 근태기록 시스템 출력본(수기 관리대장X)	
	4) 전체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서류(현장심사일 기준 최근 1개월) - 급여대장, 이체내역, 생산시설의 통장사본 ※ 3)출퇴근기록부와 4)급여지급 월은 동월이어야 함	
	해당 시) 서류심사(서류제출) 이후 신규입사자 발생 시 - 근로계약서, 장애인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시)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	
	해당 시) 서류심사(서류제출) 이후 퇴사자 발생 시 -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직접생산 관련	**★ [중요] 신청 품목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필수설비 가동 및 필수생산공정 시연 ★** - 신청 품목별 필수 생산설비의 실제 가동여부가 현장 확인 필요 - 생산시설 소속 전문기술인력이 필수 설비를 이용하여 필수공정 수행 가능여부 현장 확인 필요 - 장애인 근로자(신청품목별 5명이상)의 직접생산 공정 수행 가능여부 현장 확인 필요	현장시연
	1) 전기요금납부고지서,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현장심사일 기준 최근 1개월)	사본제출
	2) 생산설비 관련 증빙서류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혹은 설비대장(혹은 비품대장)	
	3) 제조·판매원 표시	

2 현장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검토 결과 적합 시설

○ 심사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심사

* 필요시, 현장에서 추가서류 요청(현장에서 즉시 제출 불가 시, 별도 지정기한 내 제출가능)

☞ **[서식 15] 추가자료 제출 요구서(현장용)**

○ 심사방법 : 현장방문(2인 조로 심사원 구성) * 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

- 필요시 생산시설에 대해 관련 자료(영상촬영, 관계자 진술녹음 등 포함) 수집 및 관계자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제출 요구 방법은 **Ⅳ. 지도·감독** 참조

○ 심사진행

구분	진행 내용
심사시작	심사원 소개, 현장심사 진행절차 및 기준 등 안내
현장심사	현장준비 서류 검토 및 보고서 작성
	근로자 및 생산공정 시연 확인
심사종결	특이사항 및 추후일정 안내

< 현장 심사 시 심사원 유의사항 >

· 심사자는 생산시설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에게 본인신분을 밝힐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며 심사자를 소개할 것

· 현장심사의 경우 생산시설 소재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그 외 장소를 점검할 수 있음

· 심사자가 기준 위반 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산시설에 사실확인서 작성·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은 내용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

· 필요시 심사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를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주소 및 연락처 등을 삭제 처리하여 제출할 것 (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외)

· 생산시설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정심사 등에 관한 설명을 심사자에게 요청 가능함

3 결과보고

○ 시설별 작성 보고서 및 현장 심사내용에 대하여 정리 후 현장심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

6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1 심사결과 확정

○ 보건복지부는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생산시설 지정 적합 여부 최종 검토·확정

○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 그 중 일부 품목만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적합 해당 품목만 지정할 수 있음

2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 신청시설)

○ 지정신청 시설에 생산시설 지정여부 공문 통보

☞ **[서식 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결과 통보서**(서류·현장)

7 이의신청 (보건복지부)

1 심사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출처는 공문으로 안내

○ 신청시설은 심사 결과(서류·현장) 부적합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법적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2 이의신청 검토 및 최종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신청시설)

○ 이의신청 검토 결과 '적합' 시설은 최종 적합 통보

○ 이의신청 검토 결과 '부적합' 시설은 최종 부적합 통보

8 지정공고 및 지정서 교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전까지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공고 (보건복지부)

○ 공고대상: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접수한 신청시설 중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

○ 정정신청 : 생산시설은 공고내용과 지정서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생산시설의 정정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고사항에 해당 정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시기 : 수시

○ 공고방법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및 꿈드래쇼핑몰(www.goods.go.kr)에 게재

2 지정서 교부 (보건복지부 → 생산시설)

○ 교부방법 : 우편 발송

○ 지정서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기지정 시설이 품목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은 기지정 품목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맞춘다.

☞ **[서식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9 생산시설 재지정

1 재지정 심사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 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재지정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이 재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이후 소재지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등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심사대상 : 지정 유효기간(3~5년) 만료예정인 재지정심사 신청시설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에 따라 상이)

○ 심사일정 : 재지정 신청시설에 대해 일정 관련 사전 예고 없이 불시 현장심사 진행(단, 필요시 사전예고 후 현장심사)

○ 심사내용 :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 등 준수여부

○ 재지정 유효기간

- 유효기간 5년 : 영 제16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동안의 장애인 고용인원 평균이 직전 지정 또는 재지정 당시 고용인원보다 5명 이상 증가하거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유효기간 4년 : 영 제16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동안의 장애인 고용인원 평균이 직전 지정 또는 재지정 당시 고용인원보다 3명 이상 증가하거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 유효기간 3년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영 제16조제3항제1호 : 최근 3년간 특별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방법 :

-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 로그인 후, '재지정심사 신청'
  ☞ 우편접수 불가
- 재지정심사는 접수기간 내에 시설별 1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 심사방법 및 절차

- 재지정 심사방법 및 절차는 지정 심사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실시함
- 서류심사 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생산시설에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산시설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심사항목은 생산시설 지정심사와 동일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① 지정 또는 재지정 이후 소재지 변경이력이 없거나, 소재지 변경에 따른 현장심사가 이미 실시되어 심사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된 경우

②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3조에 의한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최근 3년 이내에 없는 경우

③ 재지정 대상시설의 지정기준 미충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조사·신고·민원 등이 심사기간 동안 확인되는 등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④ 기타 심사기준에 대한 중복조사가 인정될 경우

※ 위 ① ~ ③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재지정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심사결과 적합) 지정서 발급

-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3~5년간 유효기간 재설정

○ (심사결과 부적합) 지정 유효기간 종료 통보

- 재지정 심사 결과,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산시설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신청시설은 심사 결과 부적합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법적 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이의신청 검토 결과 '적합' 시설은 최종 적합통보, 유효기간 재설정

- 이의신청 검토결과 '부적합' 시설은 최종 부적합 통보, 지정만료

○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재지정 대상시설의 장애인 학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재지정 심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지정종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을 관할 주무관청에 인계하고 후속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재지정 심사과정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지정 유효기간을 일시 연장한 후, 동 위반 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절차(청문 등)를 진행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할 수 있음

※ 이외 절차 사항은 지정심사 기준을 준용함

10 지정서 재발급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1 지정서 재발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재발급 사유

- 지정서의 기재사항(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등

○ 재발급 신청 : 재발급 사유가 발생(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 (반납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우선구매심사팀)

※ 재발급 접수 및 처리일자

- 접수 : 해당 월 1~10일 → 처리 : 해당 월 11~30(31)일

○ 제출서류

- 지정서 재발급 신청공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꿈드래 쇼핑몰 – 우선구매제도– 알림마당/고객광장 → 공지사항」

☞ **[서식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분실한 경우 : 해당없음)
- 재발급 사유별 제출서류

재발급 사유	제출 서류
지정서 분실·훼손	사업자등록증명(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해당시)
생산품목 반납	공문(품목반납사유 기재)
운영법인 명칭변경	사업자등록증명(생산시설), 사업자등록증명(법인) 또는 고유번호증(법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해당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운영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명(법인) 또는 고유번호증(법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해당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업자등록증명(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해당시)
생산시설 명칭 변경	사업자등록증명(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해당시), 인허가서류(변경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시)
생산시설 시설장 변경	사업자등록증명(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해당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생산시설장), 국세청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및 각 사업자등록증명(생산시설장))
생산시설 주소 변경	사업자등록증명(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해당시), 인허가서류(변경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시), 생산시설 관련사진(생산시설 전경, 생산시설 내부공간, 생산시설 보유설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총사업자 등록내역(해당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 ※ 지정서 재발급 신청 후「사후점검 자료 제출*」필수 * 제출방법: 우선구매관리시스템

2 재발급 사유별 처리절차

○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생산시설 대표자, 명칭, 소재지)

- 생산시설은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예: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제출

- 생산시설 주소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추가 소재지 포함)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심사를 할 수 있음

  * 현장심사 결과 부적합 확인 시에는 시정조치 요구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생산시설 제출서류 및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현장심사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재발급 여부 결정 및 지정서 재교부

○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추가하는 경우

- 지적도상 인접·연접한 주소는 하나의 장소로 보나, 그 외의 경우는 복수의 소재지로 봄

- 복수 소재지 사업장 운영은 기 지정받은 생산품목의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생산 공간(원부자재·완제품 적재, 복리후생시설 등 포함)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단, 하나의 생산시설이 2개 이상의 분리된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지정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10명) 등을 포함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소재지 추가를 인정함

< 여러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 예 >

구분	연접 여부	판단
동일 품목 (종된 사업장의 경우 포함)	연접	동일시설
	원거리	동일시설
상이 품목 (종된 사업장의 경우 포함)	연접	동일시설
	원거리	지정번호는 1개 부여하지만 사업장별로 각각의 지정기준 갖춰야 함

- 소재지 추가를 증명하는 관련서류 제출

  * 생산시설 소재지 분산에 따른 소재지별 근로자(장애인, 비장애인) 배치계획, 생산설비 및 공정 관리운영 계획 등 추가 제출

○ 운영법인이 변경된 경우

- 대상시설: 기존의 운영법인이 다른 운영법인으로 변경된 생산시설

- 지정번호 및 지정기간 : 기존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 유지

- 변경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및 재발급

- 심사방식: 서면심사(필요시 현장심사 가능)

※ 변경 전 법인이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인 경우 제재기간 해제시까지 재발급 불가

- 단, 변경된 장애인복지단체 또한 「신청자의 적격성」의 사업 실적 기준(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있을 것) 동일 적용

- 필요서류

<table>
<tr><th>구분</th><th>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th><th>장애인복지단체</th></tr>
<tr><td>공통서류</td><td colspan="2">1. 생산시설 내부 신청공문
2.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3. 생산시설 지정서(앞, 뒷면)
4.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법인 설립인가증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정관 또는 규약
7. 사업자등록증(시설)
8. 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고유번호증(법인)
9. 생산시설(지점) 양도·양수 계약서
10. 고정자산관리대장
11. 직원 명부(자유양식)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td></tr>
<tr><td rowspan="4">추가서류</td><td>장애인직업재활시설</td><td rowspan="4">장애인복지 관련
고유목적사업 실적 내역서</td></tr>
<tr><td>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td></tr>
<tr><td>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td></tr>
<tr><td>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td></tr>
</table>

11 세부품목 추가신청

1 관련근거

○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별지] 제2호 서식 '생산시설 지정서'

2 주요내용

○ 심사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심사시기 : 상시접수 및 심사

○ 심사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생산설비, 생산공정, 인허가사항, 자격사항 등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

*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지정관리 - 세부품목 관리 - 세부품목 추가 신청

※「붙임1.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세부품목 추가 신청 매뉴얼」참조

○ 처리기한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 신청 세부품목 종류 및 기타 심사 일정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절차

- 세부품명 변경(수정, 추가, 삭제 등) 방법 및 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8항)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절차에 따름

- 기지정 세부품목(품명)과 다른 직접생산기준(설비·공정, 전문인력, 인증, 인허가 기준 등)을 적용받는 세부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현장조사 후 지정서 변경 발급

- 기지정 세부품목(품명)과 동일 설비·공정을 사용하는 세부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생략, 서면 자료 확인 후 재발급 가능

3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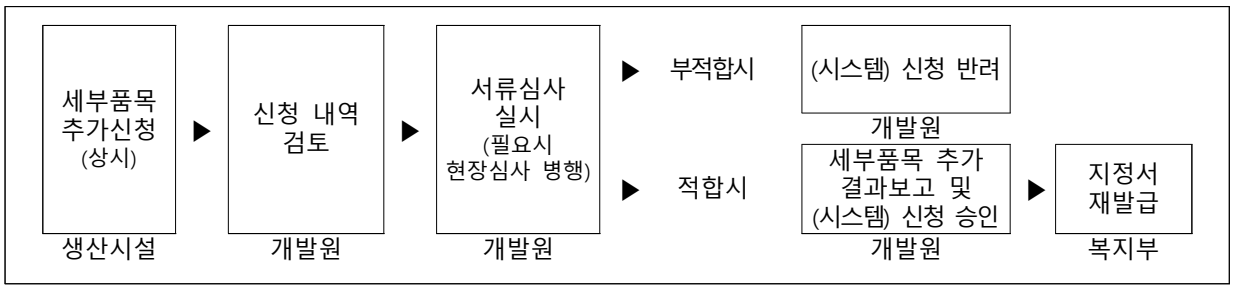

4 지정서 표기 방법

- 지정서 '생산품목' 란에 '소분류제품명'에 해당하는 지정 생산 품목명을 표기하고, 세부품명과 세부품명번호(G2B분류번호) 기재

* 지정서 표기 예시

(뒤쪽)

<별지> 앞쪽에서 이어짐				
○ 생산시설: ○○○○○ (지정번호 2025-000) ○ 생산품목 세부품명				
연번	생산품목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비고
1	인쇄물	기타인쇄물	5510159901	-
		정기간행물	5510151901	-
2	판촉물인쇄	-	-	[보유설비] 패드인쇄기

12 찾아가는 심사상담

1 주요내용

○ 관련근거 : 특별법 제12조

○ 접수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예비 생산시설

○ 접수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과는 생산공정이나 설비 등 기준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 그 외 심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 참고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제1호 '신청자의 적격성' 충족 시설만 찾아가는 심사상담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적격성을 충족하지 않은 예비 생산시설은 심사기준 문의(서면검토)만 가능

2 신청방법

○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 '찾아가는 심사상담' 등록

* 이용매뉴얼 「붙임2」 참조

- 이메일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및 등록

1) 신규(세부)품목 문의 : 품목명, 용도, 직접생산을 위한 설비, 공정도, 관련 인허가사항 등 관련 내용 작성 및 자료 첨부

2)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등 기타 문의 : 신청자격, 근로자 고용 및 직접생산 등 확인을 위한 내용 작성 및 자료 첨부

3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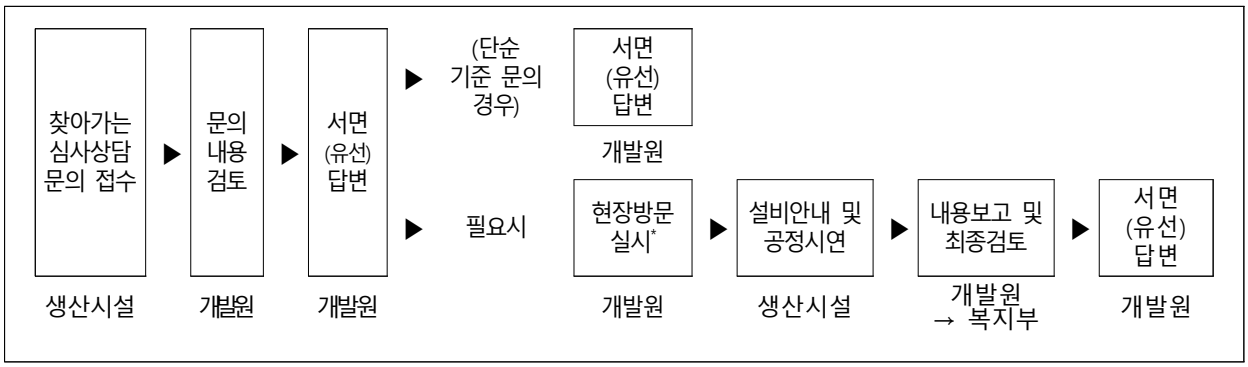

* 신규품목의 경우 설비 및 공정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 할 수 있음

Ⅲ. 생산시설 사후관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사후점검 통합관리계획 수립 · 운영

1 주요내용

구분	일정	비고
정기 사후점검	연중 상시	
민원점검	연중 상시	
근로자현황 점검	연 2회(반기별)	
재무제표 공시	연 1회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전출금 활용실적 점검	연 1회	

2 기타

○ 점검대상 유형, 점검대상 수, 점검대상 기준연도 등은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및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에 게재

○ (행정사항) 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현행화 관리(개발원→보건복지부)

2 정기 사후점검

1 점검 목적

○ 엄격한 사후관리로 투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정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대외 인식 개선 도모

2 점검 유형 및 내용

○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전반

점검 유형	점검 사유	주요 점검내용
종합점검	2년 전 재지정 시설	지정기준 준수여부 종합 점검 (장애인근로자, 직접생산)
	행정처분 시설	
소재지변경 점검	생산시설 소재지 변경	생산시설 소재지 현장점검 (장애인근로자, 생산설비, 인허가 등)
근로자 점검	근로자 현장점검	장애인근로자 현장 확인, 고용비율, 급여지급,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 관련 사항 점검
계약이행 점검	계약이행 점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건 이행에 필요한 설비보유 및 가동, 필수공정 이행, 원부자재 수급 등 직접생산 가능 여부 점검
시정조치 점검	시정조치 점검	직전 심사를 통해 통보되었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기타	기타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점검 진행

3 점검 방법 및 점검반 구성

○ 점검방법: 사전예고 없이 불시 진행 점검

※ 직접생산 공정시연 등 사유 발생 시, 사전 연락 후 점검을 진행 할 수 있음

※ 위법행위 및 조사거부 방지를 위해 전체 생산시설 대상 정기 사후점검 사전 안내(점검시설 미공개)

○ 점검반 구성: 2인 1조*로 구성

* 점검의 종류, 생산시설의 특성, 점검 사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인력으로 점검반 구성

*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동행 가능

4 점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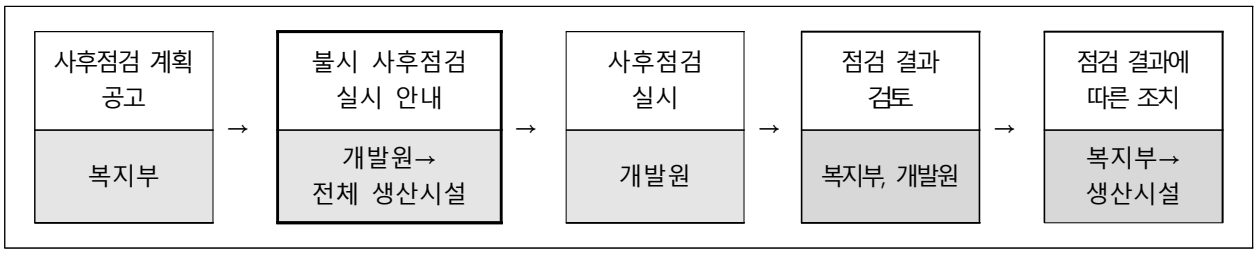

○ 계획 수립

- 점검목적・근거・종류・대상・범위, 점검 기간 및 점검 방법 등 포함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연도별 사후점검 운영 계획을 매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점검 관련 제반 사항 지원

- 점검계획 수립 시 조사대상 생산시설에 제시하기 위한 '현장조사서'준비

※ 현장조사서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자, 관계법령 등 명시

☞ **[서식 12] 현장조사서**

○ 점검 실시(서류 및 현장 조사)

- 장애인근로자 고용, 생산품 직접생산, 생산공장 및 생산설비 보유 여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점검

※ 현장 점검 시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납품 현황, 원부자재 구입 및 현황 및 매입・매출장, 생산설비 현황, 공공기관 소통내역 등 생산품 직접생산 관련 사실관계 확인

- 점검 시 생산시설 대표 등이 부재하여 서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점검 시 제출 요청한 자료 검토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서식 15] 추가자료 제출요구서**

- 생산품 생산 관련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부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 점검 중 거짓 또는 사실관계에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생산시설 근로자 등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 점검 중 불법행위나 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생산시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대표 혹은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

<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사실확인서 제출 요구 방법 >

※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사실확인서 제출 요구
- 점검자는 현장·서류 등에서 확인한 위반.부당의심 내용을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설명 후 사실확인서 작성
- 점검자는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생산시설 대표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에 서명 요청
  * 확인서에는 점검대상, 지정기준 위반 행위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생산시설 대표 등이 확인서의 작성.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에 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한 내용을 점검자가 기재한 후 점검반 전원이 서명

☞ [서식 13] 사실확인서 / ☞ [서식 14] 생산설비 보유 확인서

○ 사후점검 거부·방해 시

< 점검 거부·방해·기피 행위(예시) >

.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사후점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조사인력이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생산시설 출입을 막거나, 조사인력의 조사 및 질문에 답하지 아니한 경우
.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조사인력을 압박하는 경우
. 기타 사후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점검 거부·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안내하고 점검에 응하도록 유도

- 최종적으로 점검을 거부할 경우, 사실확인서 작성(점검반 전원 서명)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복지부)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 점검 시 유의사항

- 심사자는 생산시설 대표자 등에게 신분증, 현장조사서, 사후점검 안내서 및 사후점검 추가 서류요청서 등을 제시하고 점검 협조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생산시설은 필요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심사의 경우, 생산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그 외 장소를 점검할 수 있음

- 심사자가 기준 위반 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산시설에 사실확인서 작성·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은 내용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

- 필요시 심사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보, 민원에 따른 점검의 경우 제보자(민원인) 신분 공개 불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 생산시설은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점검 후 조치

-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행정처분 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진행

-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기록

- (결과보고) 연 2회 보고(개발원→보건복지부)

  ※ 정기 행정처분 일정에 따라 보고 진행

3 민원점검

1 점검 대상

○ 기관 또는 개인이 비위·위법행위, 지정요건 부적합 등에 대한 제보(민원제기)한 생산시설

○ 유관 행정기관 등이 비위·불법 정황을 인지하고 점검을 요청한 생산시설

○ 생산시설 지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 관련 생산시설

○ 보건복지부가 지정요건 위반 의심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산시설

2 점검 기간

○ 연중 수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내 현장점검 실시 완료)

3 점검방법 및 점검반 구성

○ 점검방법: 사전예고 없이 불시 진행 점검

○ 점검반 구성: 2인 1조*로 구성

* 점검의 종류, 생산시설의 특성, 점검 사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인력으로 점검반 구성

*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동행 가능

4 점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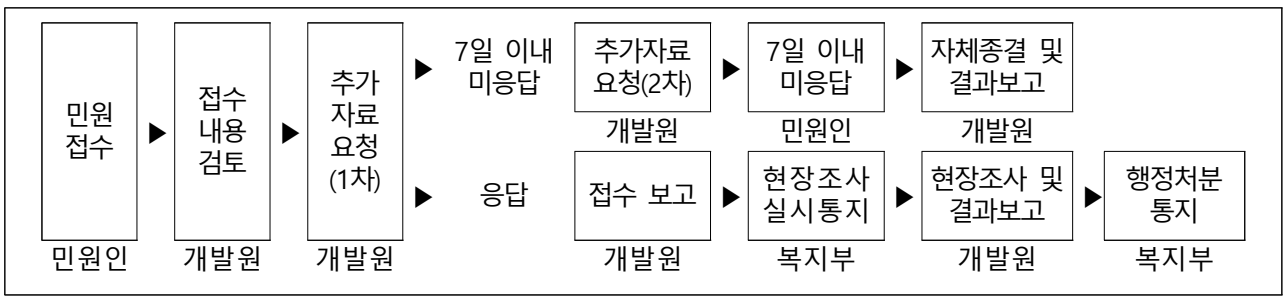

○ 민원접수

- 민원인(기관)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접수보고 진행

- 민원인이 보완요청에 2회 미응답*할 경우 관련 근거에 의해 자체 종결

  * 1차 보완요청 이후 7일 이내, 2차 보완요청 이후 7일 이내 미응답일 경우

- 보완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통지(복지부→업무수행기관) 시행 이후 조사 실시

○ 점검 실시(서류 및 현장 조사)

- 민원제보 중심으로 점검 실시

- 장애인근로자 고용, 생산품 직접생산, 생산공장 및 생산설비 보유 여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점검

  ※ 현장점검 시 심사결과의 근거자료로 녹음,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과의 소통내역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납품 현황, 원부자재 구입 및 현황 및 매입·매출장, 생산설비 현황, 공공기관 소통내역 등 생산품 직접생산 관련 사실관계 확인

- 점검 중 거짓 또는 사실관계에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생산시설 근로자 등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 점검 중 불법행위나 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생산시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대표 혹은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

<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사실확인서 제출 요구 방법 >

※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사실확인서 제출 요구
- 점검자는 현장·서류 등에서 확인한 위반.부당의심 내용을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설명 후 사실확인서 작성
- 점검자는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생산시설 대표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에 서명 요청
  * 확인서에는 점검대상, 지정기준 위반 행위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생산시설 대표 등이 확인서의 작성.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에 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한 내용을 점검자가 기재한 후 점검반 전원이 서명

☞ **[서식 13] 사실확인서 / ☞ [서식 14] 생산설비 보유 확인서**

○ 민원점검 거부·방해 시

< 점검 거부·방해·기피 행위(예시) >

.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사후점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조사인력이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생산시설 출입을 막거나, 조사인력의 조사 및 질문에 답하지 아니한 경우
.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조사인력을 압박하는 경우
. 기타 사후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점검 거부·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안내하고 점검에 응하도록 유도

- 최종적으로 점검을 거부할 경우, 사실확인서 작성(점검반 전원 서명)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복지부)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 점검 시 유의사항

- 생산시설은 심사자에게 신분증, 현장조사서, 사후점검 안내서 및 사후점검 추가서류요청서 등에 대해 안내받고 필요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심사의 경우, 생산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그 외 장소를 점검할 수 있음

- 심사자가 기준 위반 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산시설에 사실확인서 작성·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은 내용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

- 필요시 심사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생산시설은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제보, 민원에 따른 점검의 경우 제보자(민원인) 신분 공개 불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5 점검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 점검 진행상황 보고

- 점검반은 주요 조치사항,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점검 당일 유선보고

○ 점검 결과보고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점검 종료 시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

- 현장점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점검결과 통보

- (점검결과 이상없음) 점검 종료

-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생산시설 행정처분 절차에 따름

4 현황 점검

1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 현행화

○ 생산시설은 소속 근로자 고용현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상시 입력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

- 보건복지부는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현행화 입력 실태 점검

○ 자료 미입력 및 현행화 자료에 따른 지정기준 미달 시설 관리

-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화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기피로 보아 행정처분할 수 있음

-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생산시설에 대해 미달 사유 확인(한국장애인개발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세부기준'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보건복지부)

○ 점검일정(안): 연중 2회(반기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상	전년 말 (12.31.)기준 대상시설*						상반기(6.30.)기준 대상시설*					
추진 내용	근로자 현황 제출요청	제출 자료 검토	소명자료 제출요청 및 검토	-	-	-	근로자 현황 제출요청	제출 자료 검토	소명자료 제출요청 및 검토	-	-	-

2 생산시설 재무제표 공시

○ 생산시설의 재무제표는 연 1회 이상 생산시설(또는 운영법인) 홈페이지 및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공시

- 제출 대상: 전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시설
- 제출 경로: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업무시스템게시판 → 시설재무제표 공시
- 제출 내용: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 미공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 진행

3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전출금 활용실적 점검

○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총액(우선구매 매출 총액)의 10/100 초과 법인으로 전출 금지

- 전출하는 경우 매년 확정 재무제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에 대한 활용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점검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장애인복지단체

○ 점검기간: 연 1회

○ 점검내용

- 우선구매 매출액 대비 법인전출금 비율 10% 초과 여부 검토
-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 내용 간 일치 여부 확인
- 운영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 검토
- 생산시설 소명자료 타당성 검토

○ 장애인복지단체의 법인전출금 사용내역 점검을 위해 ‘법인전출금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과 ‘사실증명’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등록

☞ **[서식 22]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전출금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

○ 매출 총액 기준 초과하여 전출하는 경우, 소명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

- 법인전출금 부적절 사용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 진행

5 종사자 의무교육

1 교육 목적

○ 심사기준에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설장 및 직업재활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2 추진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심사항목별 심사기준 2-마-2)-라)*

* 생산시설의 장과 직업재활 지원 인력은 지정 이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추진 계획

○ **(교육대상)** 생산시설의 시설장 및 직업재활 지원인력(시설 당 2명)

※ 생산시설 시설장이 다수의 생산시설을 겸직하는 경우, 1개 생산시설 교육 이수로 갈음

○ **(교육의무)** 연 1회 이상 (4시간 기준)

○ **(교육일정)** 연 총 4회(예정)

○ **(교육방식)**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 병행

* 교육 당해 전년도 종사자 의무교육 미이수 시설은 대면교육으로 실시

○ **(신청 및 수료)**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이수 여부 확인

○ **(후속조치)** 미이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 진행

4 주요내용

○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수의계약대행 절차 및 수의계약대행 지원 시스템 사용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기타 교육 특강(노동법, 산업안전교육 등)

5 사용매뉴얼: 「붙임」 참조

Ⅳ. 생산시설 행정처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1. 신청자의 적격성
>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여부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행정처분 요건

1 행정처분 사유 (특별법 제10조)

○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당연 취소)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당연 취소)

○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행정처분 사유별 주요내용

○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법 제10조제1항1호)

(1)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수 미달 : 장애인근로자 10명 미만
(둘 이상의 품목의 경우 품목별 5명 미만)

(2)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및 중증장애인고용비율 미달 :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비율 70% 미만,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미만

* 단, 특례적용 품목의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특례 품목과 제조품목을 동시에 지정받을 경우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은 각 품목별로 해당품목에 배치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함

(3)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 미달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 기준으로 생산공정 참여율 50% 미만

☞ **원칙적으로 '지정받은 품목'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산공정 및 서비스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근로시간을 적용함**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미이행 : 생산공장·설비·인력·공정·직접생산 여부 등 기준 부적합

<예시>

. 생산 공장 기준 미달
.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기준 미달
.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 인력 기준 미달
.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준 미달
.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 기준 미달 등

○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제1항2호)

<예시>

. 제품 품질 이상으로 납품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식 문제제기 된 경우
. 고의적 또는 상시적인 납기지연 및 AS지연.거부 등으로 발주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식 문제제기 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생산 제품.서비스 강매 등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식 민원제기 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법 제10조제1항3호)

<예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신고 시 거짓.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업 또는 계약수주과정에서 뇌물.향응, 부당한 반대급부 제공 등이 확인된 경우
.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복지단체와 무관한 제3자가 부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법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생산시설 지정 신청한 경우
. 인허가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하여 지정받은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등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법 제10조제1항4호)

☞ 이 경우에도 지정취소 시설에 대한 1년간 재지정 제한규정이 적용됨

※ 생산시설 지정취소 요청 절차
○ 제출서류
- 지정취소 요청 공문(취소사유 포함 작성)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 추가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 확약서 등)
  ☞계약 진행 중인 경우, 확약서 필수 제출
○ 제출방법
-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로그인' → 지정관리 → 지정취소관리(지정취소신청)

○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법 제10조제1항5호)

<예시>

. 다른 회사가 생산시설 명의(또는 상표)로 우선구매 납품하도록 한 경우
. 다른 유사.동종업 회사 소속 임직원이 생산시설 명의의 홍보물(명함 등 포함)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등

○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법 제10조제1항6호)

<예시>

. 사후점검 거부·방해·기피, 근로자현황 미제출, 생산시설 재무제표 공시 위반,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전출금 활용실적 제출 거부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등

3 지정취소 시설에 대한 제재 (법 제10조제2항)

○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생산시설로 지정하지 않음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

.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지정취소를 요청하여 취소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4호)에도 동 제재조항 적용됨

2 행정처분 적용기준 등

1 행정처분 세부기준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함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음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줄일 수 있음. 다만,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줄일 수 없음

1) 영업정지 :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지정취소 :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2호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5호	지정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 시행일(2024년 8월 7일)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 기준을 따름

< 참고 : 행정처분 범위 >

○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개별기준에 근거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

※ 개선명령, 영업정지를 받은 생산시설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시정조치 미비·미제출 시 추가적인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음)

* (개선명령) 개선명령 후 3개월 이내 / (영업정지)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개선명령**) 위반행위 유형 중 지정 요건 미달, 품질보장 의무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생산시설 대상 개선명령 통보

- (**영업정지**)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개별기준에 근거하여 위반행위 및 동일 위반행위 유형 반복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처분

- (**지정취소**) 원칙적으로 위반 품목과 관계없이 생산시설 전체 지정취소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위반정도(위반의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 복합성 등) 및 청문위원의 청문결과에 따라 심사기준 위반의 원인이 된 해당 품목(일부품목 취소)에 한해 지정취소될 수도 있음(이 경우에도 생산시설의 직접생산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2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제3호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매출액의 산정기준

가. 제3호가목1)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다만, 위반행위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3호가목2)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계약 중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계약의 매출액 또는 계약액

다. 제3호가목3)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3.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세부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3)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나. 감경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처분 절차

1 행정처분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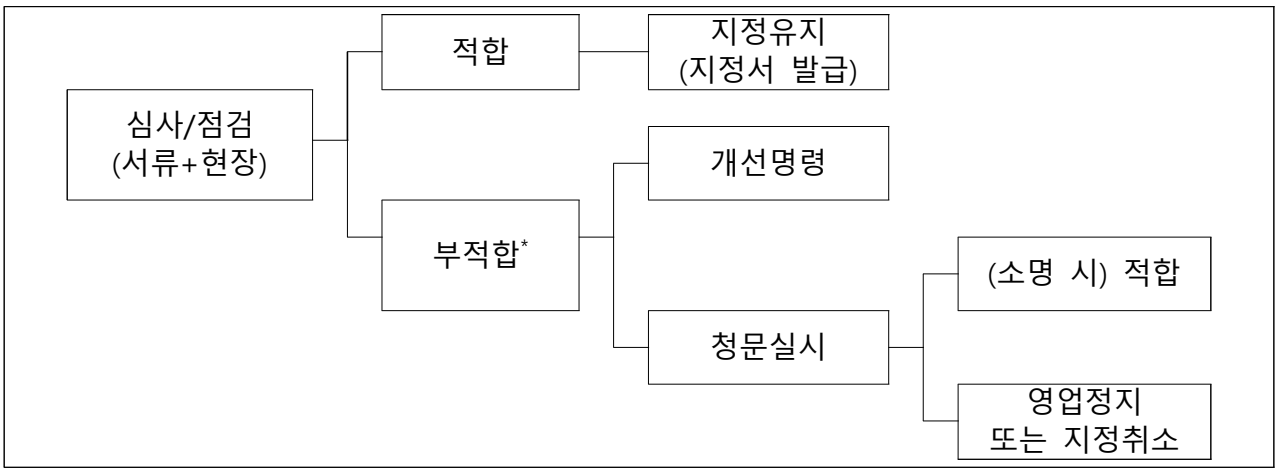

* 위반 행위 및 위반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 결정

2 행정처분 절차 진행기준

○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 지정취소) 실시

○ 행정처분(개선명령) 이후 기한 내 보완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청문 등 실시 후 2차 행정처분 진행

○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청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정도 및 반복 횟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3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 ↔ 생산시설)

○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 통지

*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 **[서식 16]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생산시설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제출처는 공문으로 안내)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서식 17] 의견제출서**

4 청문 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 청문실시 통지

- 제출된 의견 등을 통해 부적합 사항이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않은 경우 청문회부

  *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중한 위반사항을 청문대상으로 하나,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청문 회부할 수 있음

-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실시 통지(청문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서면통지)

- 출석을 원치 않을 경우, 청문출석포기 확인서 징구

  *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

  ☞ **[서식 18]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서식 19] 청문출석 포기 확인서**

○ 청문위원 구성 :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 청문실시

- 청문주재자의 주재에 따라 증거조사 및 질문, 관계자 진술 청취 등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청문종료 후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출

☞ **[서식 20] 청문조서** ☞ **[서식 21]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조서 등 작성 시 포함내용(행정절차법 제34조, 제34조의2)**>**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1.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행정처분의 확정 및 통지 등 (보건복지부 → 생산시설)

○ 보건복지부는 의견제출서 및 청문결과 등을 토대로 처분 여부 등 확정

- 당사자 등 제출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대상자에게 결과 통지

- 행정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꿈드래 쇼핑몰 공고* (필요시 유관기관 통보**)

  * '지정취소'에 한해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신고수리기관,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설립 허가기관 등

- 행정처분 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기관을 통해 수의계약 대행 등에 있어 납품 배정 등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음

6 행정처분 실시 일정(안)

○ 연 3회 행정처분 실시

4 벌칙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 형사고발

○ 형사고발 대상 : 특별법 제22조 해당 생산시설 관계자 등

- 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 특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벌칙내용 : 사법기관 수사결과 특별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명의대여 의심사례(예시)>

. 유사.동종업체 임직원이 생산시설 이름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생산시설이 그렇게 하도록 묵인한 행위 포함)

. 타인(일반기업 등)이 생산시설 이름으로 물품.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방식으로 계약.납품하는 경우(생산시설이 그렇게 하도록 묵인하는 행위 포함)

.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23.12.26, 개정안 기준) 제2조 제10호 '명의대여' 및 제11호 '명의차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 10. "명의대여"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체 이외의 자가 단체 명의를 사용하고 직접생산시설 등을 투자하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 "명의차용자"란 단체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단체 명의로 직접생산시설 등 모든 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생산시설을 단체의 생산시설로 형식상 등록하여 원부자재의 구매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고 단체에게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2 과태료

○ 처분대상 : 지도·감독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생산시설

- 사후점검 거부·방해 등에 따라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그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거나, 날인거부 시 거부 내용 등을 점검자가 기재한 후 점검자 전원이 서명

○ 처분방법 및 절차 : 관련법에 따라 산출된 과태료를 생산시설에 부과

- (산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관련법에 따라 1/2범위 내 가·감경 적용 가능)

<과태료 산출기준(「특별법 시행령」 별표4)>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우선구매특별법 제23조제1항	100	200	300

<과태료 감경사유>

.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유공자 및 미성년자 등)

.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일반기준 등은 특별법 시행령 별표4 참조

-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면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지정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통지내용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기한, 과태료 경감 가능 사항

- (부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5 고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법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위반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동 제도의 취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 도용 및 명의 대여 등을 함으로써 다른 생산시설에 대한 영향(피해)이 현저히 큰 경우
- 제9조 제2항 및 제항을 위반하여 명의 도용, 명의 대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준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및 약속한 경우
-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 도용, 명의 대여 등을 통해 다수의 시설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 그밖에 기간, 횟수, 동기,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파일

붙임1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세부품목 추가 신청 매뉴얼

○ 신청방법

-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접속 - 세부품목 추가 신청 - 세부품목 신청 작성



담당자 정보 입력, ‘품목추가’ 클릭



기지정품목 선택



①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품목명 조회

1) 돋보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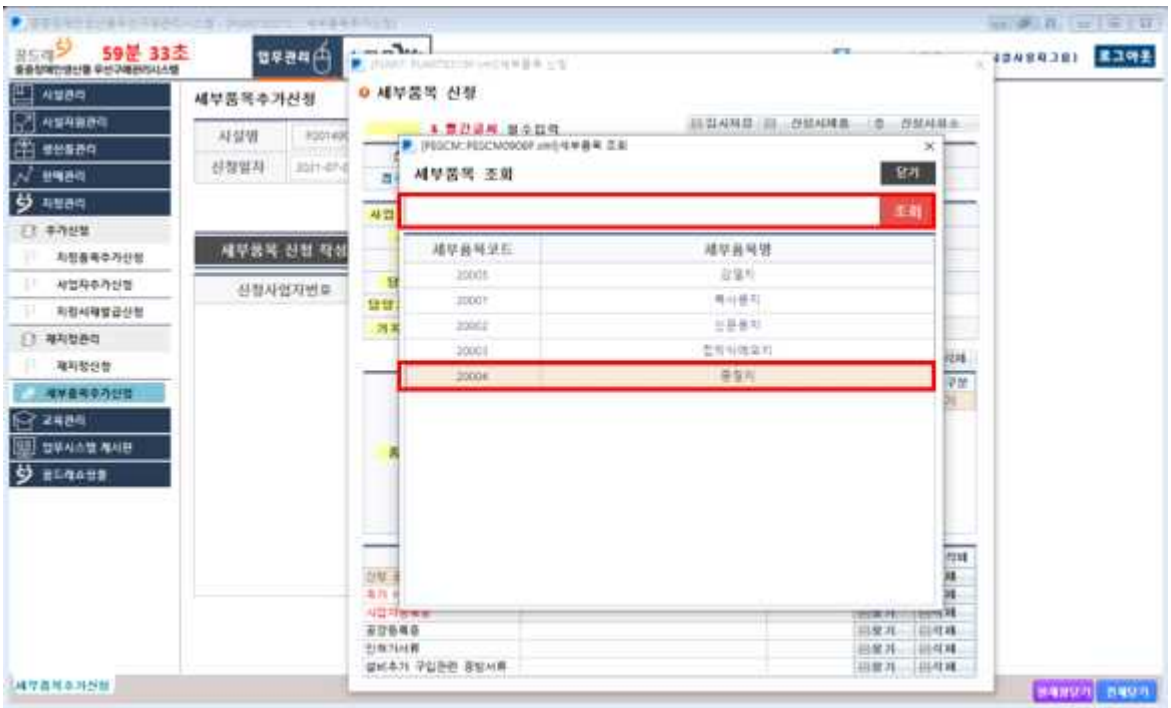

①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품목명 조회

2) 세부품목명 조회 후 선택



①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품목의 G2B분류명 조회

1) 돋보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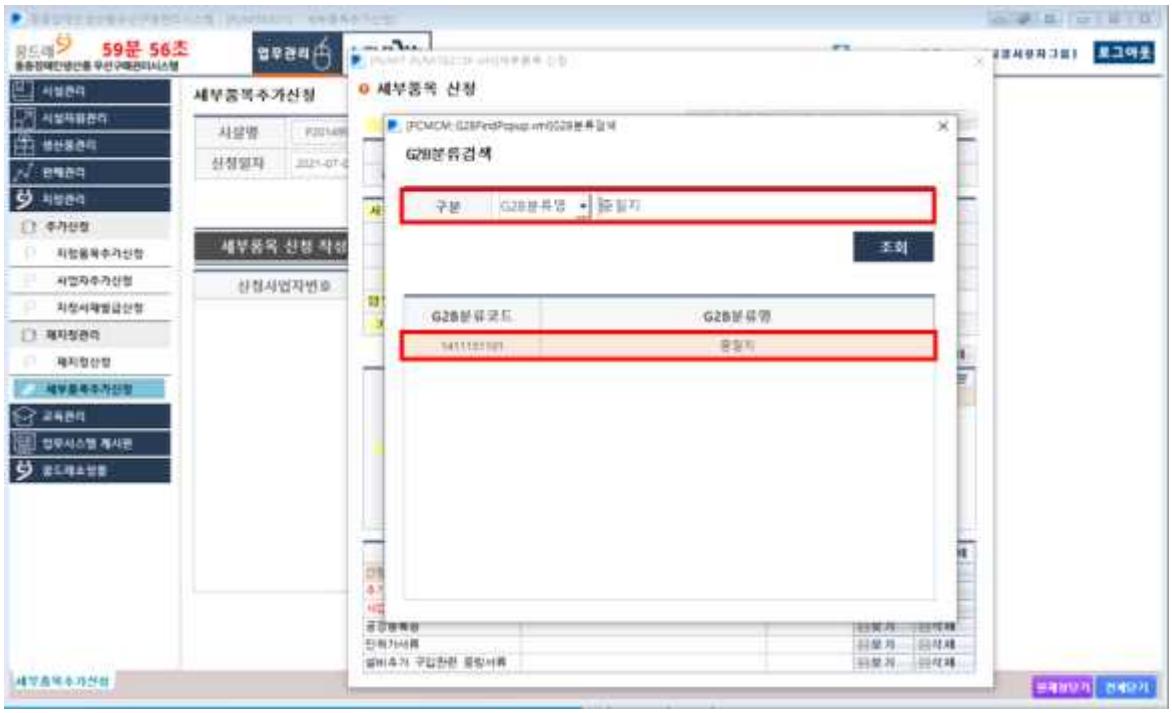

①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품목의 G2B분류명 조회

2) G2B분류명 조회 후 선택



① 입력한 정보 확인

* 추가하는 세부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 '품목추가' 버튼 클릭 후 입력 반복



① 신청 세부품목명 검색 시 조회 내용이 없을 경우 '직접입력' 체크

② 신청 세부품목명 직접 입력하기



① 제출 서류 업로드하기

* ‘제출 서류 목록 안내’ 필수확인



① 입력한 정보 및 제출 서류 재확인

② 신청서 제출 클릭



신청 완료

○ **신청내역 확인방법**

- 신청 상태(적합 / 반려 / 심사진행중) 확인
- 신청상태가 '임시저장', '반려'일 경우 삭제 가능, 그 외 상태 삭제 불가



○ 제출 서류 목록 안내

구분	제출서류	내용
필수	신청공문	* 신청 공문 예시 하단 참고
	신청 세부품목별 공정도	- 세부품목 신청 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해당시	공장등록증	- (보유시)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인허가서류	- 신청 세부품목 생산을 위해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허가사항 - 예시① 인쇄물 생산시설이 인쇄물(정기간행물) 추가 신청 시 [인쇄사신고필증] 제출 예시② 마스크 생산시설이 마스크(의약외품) 추가 신청 시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 제출
	설비 추가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신청 세부품목 생산을 위해 기존 보유설비 외 추가로 구입한 설비가 있을 시 아래 서류 제출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세무사 직인 필수) 또는 구입 증빙서류 일체(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등)

○ 신청 공문 예시

신청 공문 예시

제목 세부품목 추가 신청 건(○○○직업재활시설/단체)

○○○직업재활시설/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품목 중 "인쇄물" 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부품목 추가 등록을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지정 세부품목: 인쇄물(기타인쇄물)

나. 추가 신청 세부품목: 인쇄물(교재, 팸플릿, 수첩, 달력)

붙임 1. 추가 신청 세부품목별 공정도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공장등록증 1부.
4. 인허가서류 1부.
5. 설비 추가 구입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붙임2 꿈드래 쇼핑몰 찾아가는 심사상담 신청 매뉴얼

○ 신청방법

- 꿈드래누리집(https://www.goods.go.kr) 접속 - 찾아가는 심사상담



① 우측 [서비스바로가기] 하단 '찾아가는 심사상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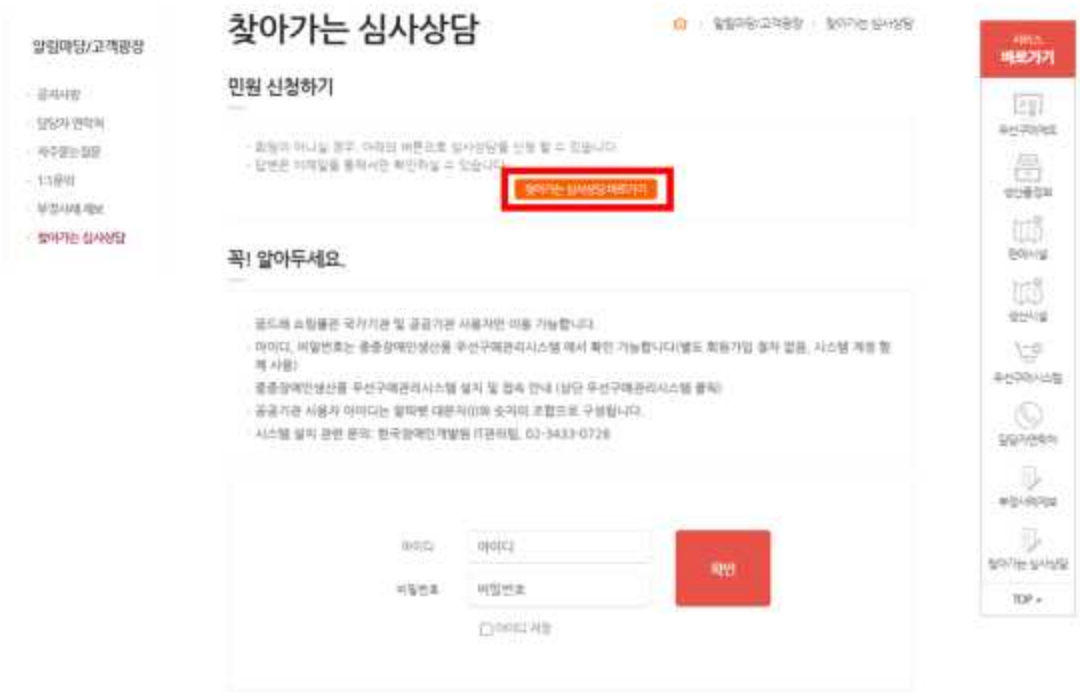

② '찾아가는 심사상담 바로가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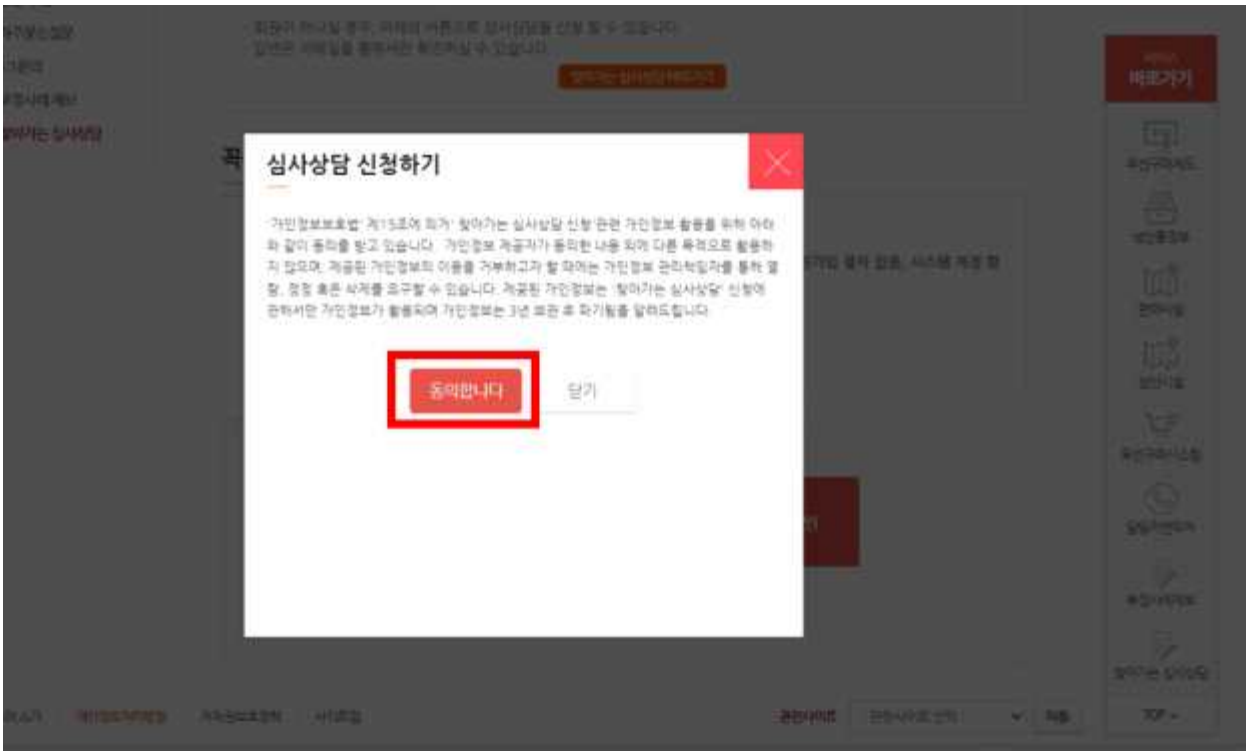

③ 개인정보동의 관련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 클릭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닫기’ 클릭, 비동의시 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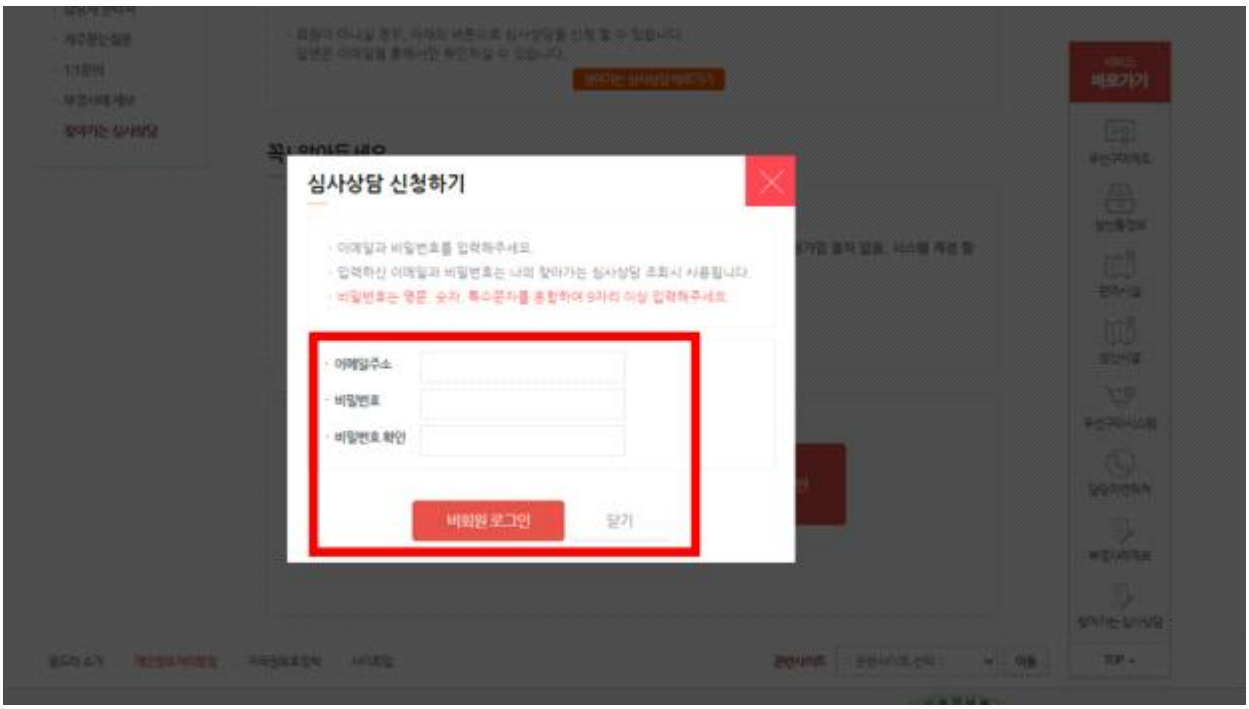

④ (답변 받을)이메일주소, 비밀번호(임의설정) 입력 후 ‘비회원로그인’ 클릭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닫기’ 클릭, 비동의시 접수 불가)



⑤ **‘신청하기’ 클릭**

(해당 메일로 기존에 신청한 내역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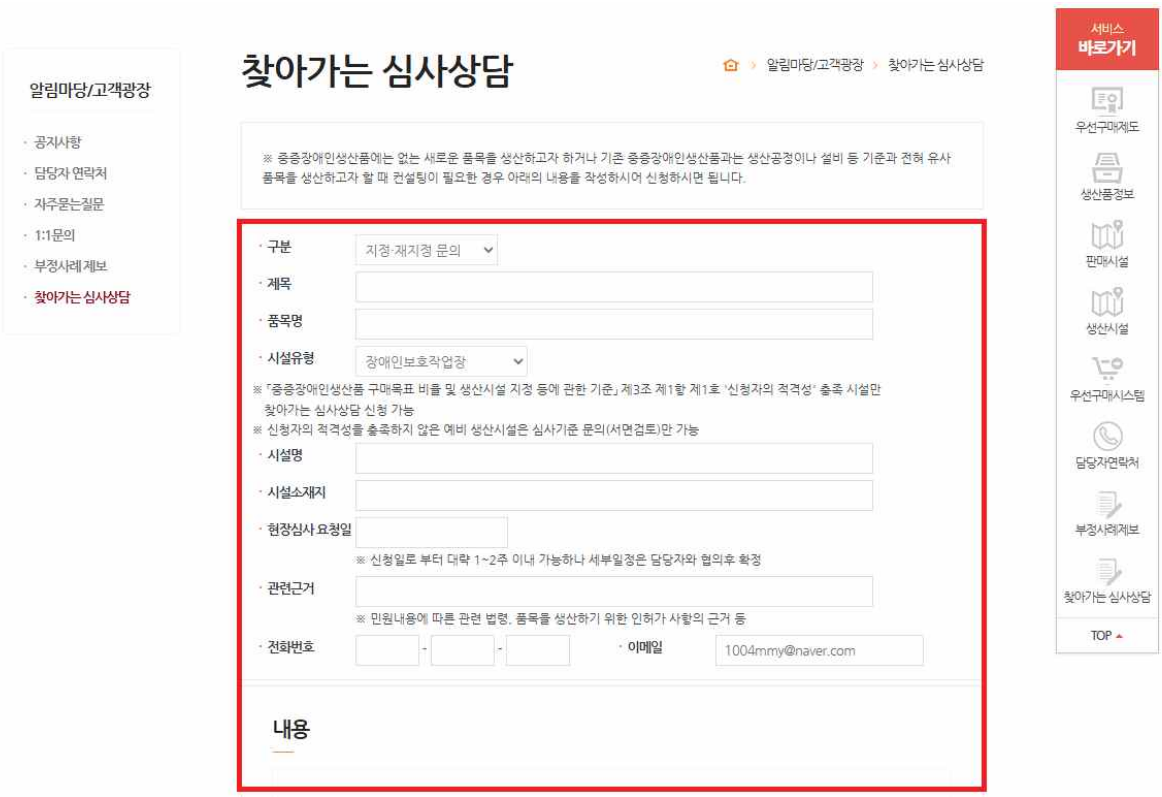

⑥ **‘구분’ 에서 문의 내용 선택 후 내용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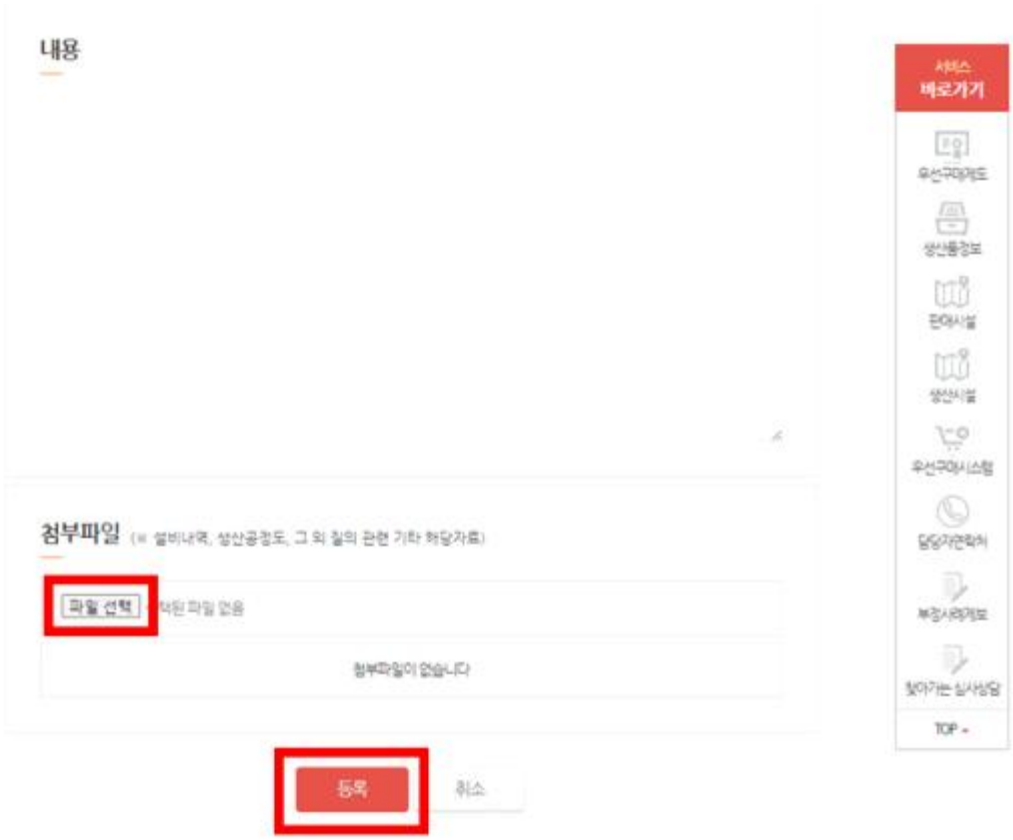

⑦ (필요시) ‘파일선택’ 하여 파일 첨부, 최종 내용 검토하여 ‘등록’



⑧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 시 해당페이지 확인 가능

* 답변이 완료될 경우 로그인 시 사용된 메일로 답변 확인 가능

붙임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의무교육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직업재활 지원인력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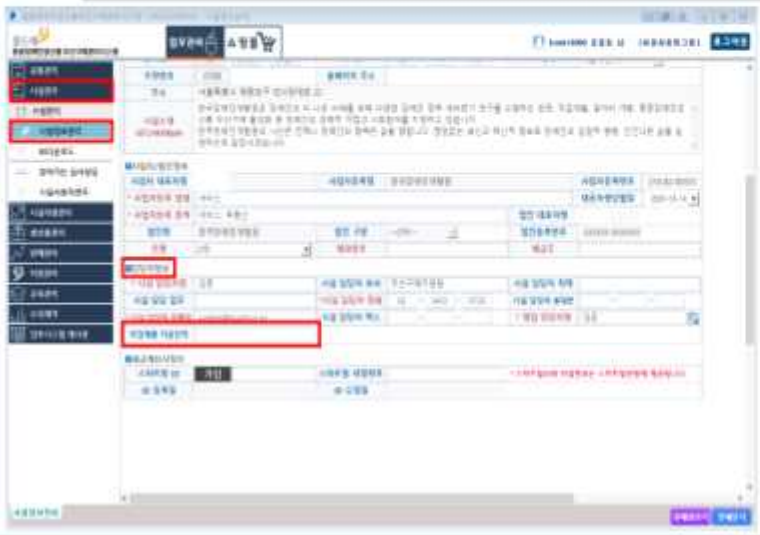

①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접속

② 좌측 메뉴 중
시설관리 → '시설정보관리' 클릭

③ '시설 정보' 탭 클릭

④ 담당자 정보 확인

⑤ '직업재활 지원인력'에 담당자 입력
• 교육 신청인과 동일하게 수정

⑥ 상단의 '저장' 클릭

1. 신청 방법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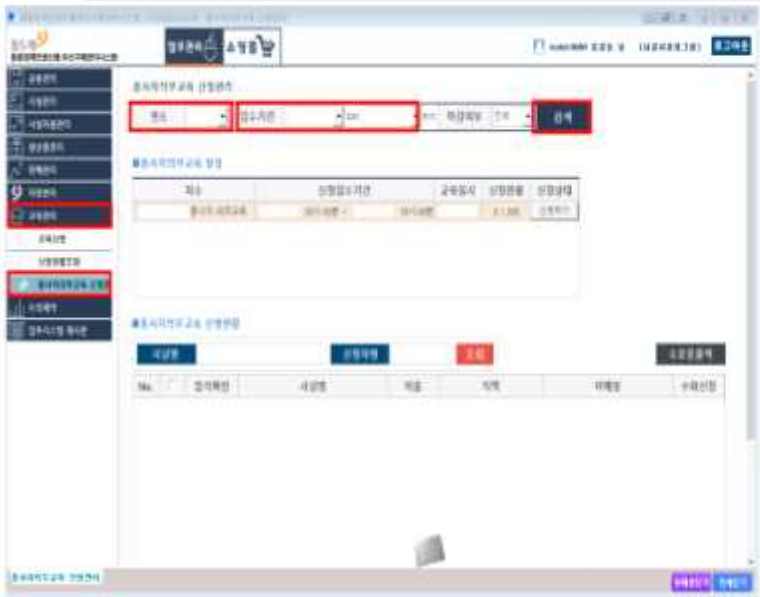

① 좌측 메뉴 중
교육관리 → '종사자의무교육
신청관리' 클릭

② 연도: 2023
접수기간: 2023-01-01
~ 2023-12-31 설정

③ '검색' 클릭

1. 신청 방법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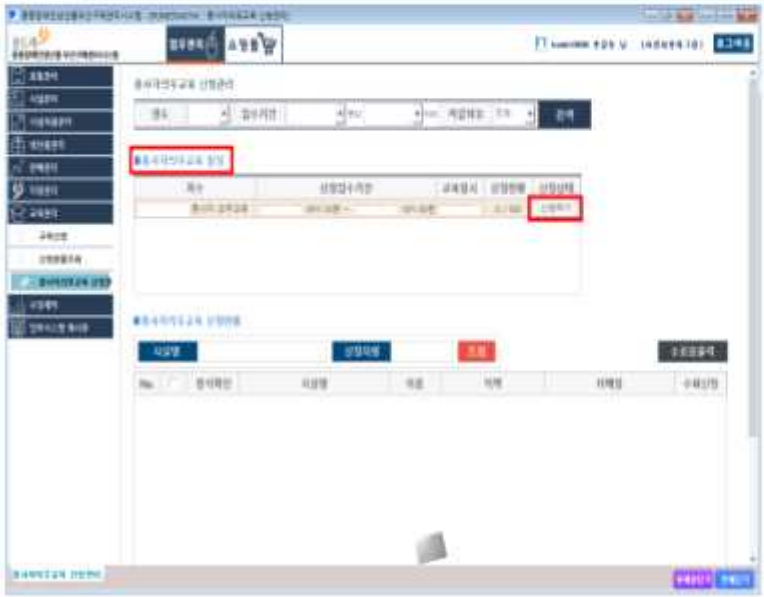

① 종사자의무교육 일정 확인

* 해당 차수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능.
(타 차수 교육 신청 희망 시 담당자 문의)

② '신청하기' 클릭

1. 신청 방법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① 교육신청 정보 확인

② 교육신청 → '미신청' 클릭

③ '신청'으로 변경 후 '저장' 클릭

2. 신청 완료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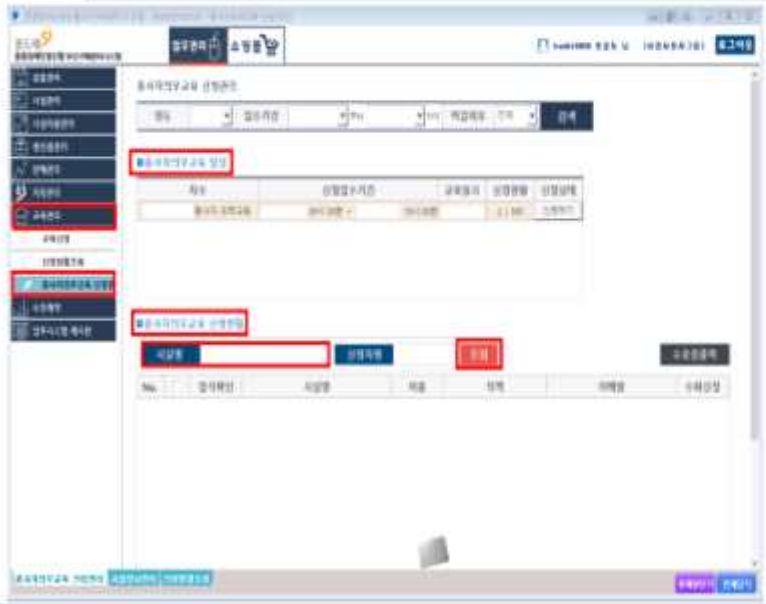

① 좌측 메뉴 중
교육관리 → '종사자의무교육 신청관리' 클릭

② 종사자의무교육 일정 확인

③ 종사자의무교육 신청현황
→ 시설명 입력

④ '조회' 클릭

2. 신청 완료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확인



① 시설대표자, 직업재활 지원인력
신청 현황 확인

3. 교육 완료

종사자 의무교육 참석 확인



① 좌측 메뉴 중
교육관리 → '종사자의무교육 신청관리' 클릭

② 종사자의무교육 일정 확인

③ 종사자의무교육 신청현황
→ 시설명 입력

④ '조회' 클릭

⑤ 참석확인 'Y' 확인

3. 교육 완료

수료증 출력



① 좌측 메뉴 중
교육관리 → '종사자의무교육 신청관리' 클릭

② 종사자의무교육 일정 확인

③ 종사자의무교육 신청현황
→ 시설명 입력

④ '조회' 클릭

⑤ '수료증출력' 클릭

• 한 명씩 선택 후 수료증 출력

각종 서식

[서식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	구분 (신규,기지정)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품목	비고

[서식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관리대장(서류·현장)

접수 번호	구분 (신규,기지정)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신청품목	심사의견 (적합·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완/시정 요구사항	비고

[서식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리대장

접수 번호	구분 (신규,기지정)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품목	지정여부	미지정 사유	비고

[서식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 번호	지정일	구분 (신규,기지정)	운영법인	시설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정품목	비고 (지정서 발송일)

[서식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관리대장

연번	점검일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점검내용	점검결과	향후 조치계획	점검구분 (정기, 수시)	제보일 경우 작성 1) 제보자 2) 제보내용

[서식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리대장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법위반/부적합 사항	처분유형	사전통지일 (1)의견제출통지	사전통지일 (2)청문출석통지	청문일	처분통지일	비고

[서식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지정 [ ]재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 성명을,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산시설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 수 총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생산품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지정 [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수행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기본현황	생산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지정번호		지정품목	
	운영법인명		법인대표	
	법인주소		연락처	
	운영법인의 주요목적사업 (정관 기준)	• • •		

연간 매출 및 수익 예상	연간 최대 생산 가능 능력 [1]	연간 예상 판매량 [2]	ⓐ 연간 예상 매출액 [3]
	(예시) *마스크: 2,000만장* *배전반: 10식*	*(예시)* *마스크: 400만장* *배전반: 5식*	*(예시)* *30,000만원*

ⓑ 연 매입* 예상액[4]	ⓒ 연간 생산시설 간 외주·하청 예상 금액 [5]	ⓓ 연간 일반기업 대상 외주·하청 예상 금액 [6]	ⓔ={ⓐ-(ⓑ+ⓒ+ⓓ)} 연간 수익 예상액
(예시) *25,000만원*	*(예시)* *마스크: 1천만원* *배전반: 0원*	*(예시)* *마스크: 0원* *배전반: 1천만원*	*(예시)* *3,000만원*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목적사업 사용계획	구분		수익금 사용 대상 사업계획	사용액[8] (만원)
	주요 목적 사업[7]	합계	*4개 사업*	*3,000*
		소계	*2개 사업*	*1,600*
		목적사업① *(예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예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소개 리플렛 제작*	*1,100*
			(예시) *발달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운영*	*500*
		소계	*2개 사업*	*1,700*
		목적사업② *(예시)장애인 인식개선*	*(예시)*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사업 부상품 지원*	*1,200*
			(예시) *대국민 인식 조사사업*	*500*
	기타[9]	소계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생산시설 대표 ○○○ (인)

확인자 : 운영법인 대표 ○○○ (인)

※ 위 자료는 향후 사후관리 및 재지정심사 시 점검기준으로 활용되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서식 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결과통보서(서류·현장)

2026년 제0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서류/현장) 결과 부적합 통지서

구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서류/현장) 부적합		
시설(단체)명			
시설(단체) 주소		대표자	
지정번호 (기지정시설)		최초지정일 (기지정시설)	
기지정품목 (기지정시설)		지정신청품목	
관련법령			
관련규정 세부내용			
심사결과			

[서식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 생산시설의 명칭:
2. 생산시설의 주소:
3. 생산시설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 .)
4. 생산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5. 운영법인의 명칭:
6.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
7. 생산품목 및 지정 유효기간:

연번	생산품목	지정 유효기간	최초 지정일	비고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위 시설(단체)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재발급일: 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

[서식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5.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시설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재발급 사유

[ ] 기재사항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 생산시설의 명칭 [ ] 생산시설의 주소 [ ] 생산시설의 장 [ ] 생산품목		

[ ] 분실 (분실 일시: 분실 장소:)

[ ] 훼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1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재발급 여부 결정	→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수행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2] 현장조사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현 장 조 사 서

조사대상	생산시설명(대표자명)	지정번호
	지정품목	연락처
	주소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담당자		
조사의 범위 및 내용		
제출자료		
관계 법령		
유의사항	거부 시 제재사항(근거법령 및 조항)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연 락 처: 전화 e-mail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3]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시설명	
점검일자	
점검자	
피점검자	

○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4] 생산설비 보유 확인서

생산설비 보유 확인서

연번	생산설비명	모델명	일련번호	구입년도	비 고

동 생산시설은 상기의 생산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지정취소), 동 법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시설명 :
대 표 자 : (서명)

[서식 15] 추가자료 제출 요구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서

<table>
<tr><td>시 설 명</td><td colspan="2"></td><td>구 분</td><td>☐ 지정심사 ☐ 사후점검
☐ 재지정심사</td></tr>
<tr><td>요구일자</td><td colspan="2"></td><td>제 출 처</td><td></td></tr>
<tr><td rowspan="8">제출요청
자료</td><td>연번</td><td colspan="2">제출자료</td><td>제출기한</td></tr>
<tr><td>1</td><td colspan="2"></td><td></td></tr>
<tr><td>2</td><td colspan="2"></td><td></td></tr>
<tr><td>3</td><td colspan="2"></td><td></td></tr>
<tr><td>4</td><td colspan="2"></td><td></td></tr>
<tr><td>5</td><td colspan="2"></td><td></td></tr>
<tr><td>6</td><td colspan="2"></td><td></td></tr>
<tr><td>7</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5">위 요청 자료를 해당 제출처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소속・직위 성명 (서명)</td></tr>
<tr><td colspan="5">위 자료의 추가 제출에 동의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심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생산시설명 직위 성명 (서명)

※ (참고) 생산시설 자료 제출 담당자 및 연락처
☐ 상기인과 동일 ☐ 상기인과 동일하지 않음 (성명) (연락처)</td></tr>
</table>

[서식 16]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7.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전자우편 주소</td><td colspan="3"></td><td>팩스번호</td><td></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5">년 월 일까지</td></tr>
</table>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x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80g/m^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내용</td><td colspan="3"></td><td>지정번호</td><td></td></tr>
<tr><td rowspan="2">2. 당사자</td><td>시설명</td><td colspan="3"></td><td>최초지정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된 사실</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4">6. 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전자우편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5"></td></tr>
</table>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서식 17]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의견제출인</td><td colspan="2">성명</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2">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r>
<tr><td>주소
(전화번호:)</td></tr>
<tr><td>의 견</td><td></td></tr>
<tr><td>기 타</td><td></td></tr>
</table>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8]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청문실시</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부서명</td><td colspan="2">담당자</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일시</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시간)</td><td>장소</td><td></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td></tr>
<tr><td>성명</td><td colspan="4"></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누리집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19] 청문출석 포기 확인서

발신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fax : 044-202-3962)

청문 출석 포기 확인서

1. 대표자 성명(처분대상자)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청문참석 포기 사유 :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20 년 월 일

처분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0] 청문조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8>

청 문 조 서

<table>
<tr><td>제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문주재자</td><td>소 속</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td><td>성명(명칭)</td><td colspan="2">주소</td><td>출석
여부</td><td>불출석한
경우의 사유</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2">참석한
행정청의 직원</td><td>직위</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청문의
일시 및 장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문공개</td><td>공개 여부</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이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당사자등의
진술내용</td><td>요지</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제출된 증거</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증거조사</td><td>요지</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증거</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기타</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1] 청문주재자 의견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2]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전출금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

<table>
<tr><th colspan="6">법인전출금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th></tr>
<tr><td rowspan="6">기본현황</td><td>생산시설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지정품목</td><td colspan="2"></td><td>지정번호</td><td></td></tr>
<tr><td>운영법인명</td><td colspan="2"></td><td>법인대표</td><td></td></tr>
<tr><td>법인주소</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운영법인의
주요목적사업
(정관 기준)</td><td colspan="4">•
•
•</td></tr>
<tr><td rowspan="2">2024년
매출현황 및
법인 전출금</td><td colspan="2">매출액 (원)</td><td>우선구매 매출액 (원)</td><td colspan="2">법인 전출금 (원)</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12">우선구매
수익금의
법인
목적사업
(장애인복지
사업)
활용실적</td><td>일시</td><td colspan="2">수익금 활용 사업명</td><td>총 사업비 (원)</td><td>법인 전출금 사용액
(원)</td></tr>
<tr><td>합계</td><td colspan="2">-</td><td>390,000,000</td><td>345,000,000</td></tr>
<tr><td>01.06.</td><td colspan="2">도내 장애인 체육 활동지원</td><td>80,000,000</td><td>35,000,000</td></tr>
<tr><td>02.14.</td><td colspan="2">OO시청 장애인 지원사업</td><td>10,000,000</td><td>10,000,000</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09.10.-</td><td colspan="2">이 외 9건</td><td>300,000,000</td><td>300,000,000</td></tr>
<tr><td>제출처</td><td colspan="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업무시스템 게시판-시설 재무제표공시</td></tr>
</table>

위와 같이 우선구매 수익금에 대한 운영법인의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생산시설의 대표 : (인)

운영법인의 대표 : (인)

[서식 2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5">신청
정보</td><td colspan="2">성명</td><td>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법인명</td><td>법인등록번호</td></tr>
<tr><td colspan="2">대표자</td><td></td></tr>
<tr><td colspan="3">주소</td></tr>
<tr><td rowspan="2">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
있는 경우</td><td>지정번호</td><td>시설명</td></tr>
<tr><td>지정품목</td><td></td></tr>
<tr><td rowspan="3">이의신청
내용</td><td colspan="3">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td></tr>
<tr><td>이의신청
내용(사유)</td><td colspan="2">○○○○○○○ 사유로 지정심사 신청 기간 내 신청이 불가하였으며 이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발생일시
- 발생사유
- 발생내용
- 관련증빙목록</td></tr>
<tr><td colspan="3">※ 시스템 오류, 공사에 의한 전기사용 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경우 해당 사유에 합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불가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수 있음</td></tr>
<tr><td colspan="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 귀하</td></tr>
<tr><td colspan="4">유 의 사 항</td></tr>
<tr><td colspan="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ex.시스템 오류화면 캡처, 전기공사 관련 공문 등)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